

제천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 번 호	1105
-------------	------

제출년월일 : 2006. 10.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함(안 제2조)
 - ※ 제천시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 106,148명('06. 6. 말)
 - 1/50 적용시 ⇒ 2,123명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불임 1. 근거법령(발췌분) 1부.
 2. 입법 예고문 사본 1부.
 3. 19세 이상 주민의 수(2006.6.30현재)
 4. 지방자치법개정관련 조례제정공문사본(충북도 자치행정과-8329, 2006. 7. 31)

제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천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천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 거 법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57호]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천시 공고 제2006 - 1134호

제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8일
제 천 시 장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 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 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함(제2조)
※ 제천시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 106,148명('06. 6. 말)
- 1/50 적용시 ⇒ 2,123명

3. 의견 제출

제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천시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전화 : 640-5132, FAX : 640-51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12-2, 제천시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390-701)
- 담당자 : 서병열(E-mail : sby5025@hanmail.net)

참고자료

19세 이상 주민의 수

<2006.6.30현재>

주민등록상 주민수		19세 이상 주민수	비율(%)
계	137,317	106,148	
01 봉 양 읍	8,273	6,804	
02 금 성 면	2,350	1,983	
03 청 풍 면	1,336	1,179	
04 수 산 면	2,255	2,008	
05 덕 산 면	2,597	2,261	
06 한 수 면	854	730	
07 백 운 면	3,399	2,928	
08 송 학 면	5,864	4,962	
09 교 동	17,454	12,464	
10 고 암 · 모 산 동	9,413	6,732	
11 중앙 · 의림 · 명동	8,053	6,547	
12 남 천 · 동 현 동	7,536	5,998	
13 서 부 · 영 천 동	7,493	6,092	
14 용 두 동	14,004	10,252	
15 신 백 · 두 학 동	15,148	10,741	
16 청 전 동	22,311	17,191	
17 화 산 동	8,977	7,257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 청 북 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 조례청구제도 개선 관련 조례 제정

1. 자치행정과-611(2006. 1. 13.)호 및 707(2006. 1. 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도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적용)에 관한 조례제정 방침결정문과 입법예고문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속히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1. 조례제정 방침결정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수신자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청원군수,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지방전산주사 임병윤 지방행정사무관 박삼용 자치행정과장 전결07/31
김전호

협조자

○ 시행 자치행정과-8326 (2006.07.31.) 접수 자치행정과-9292 (2006.08.01.)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552 / 전송 043) 220-2529 / bylim@cb21.net / 공개

조례제정 방침결정문

1. 조례명 :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함(제2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충북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 1,132,022명('06. 6. 말)

- 100분의 1 (11,321명) - 70분의 1 (16,172명)

⇒ 법 규정의 하한선인 100분의 1을 적용하여도 11,321명으로 관련 청구의 날발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현황 : 붙임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5. 조례 제정안 : 붙임

6. 관계법령발췌 : 붙임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따라 도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